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ince 200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T.02-734-3924, F.02-723-9995 civic21@kornet.net www.civilnet.net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NGO 담당 기자.
발 신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문의 : 김두수 국장 011-9962-0386, 이강준 간사 725-7104)
제 목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1년 6월 20일(수), 총 2 쪽.

보 도 자 료

국고보조금, 이대로 좋은가?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한나라당, 정책개발비 12억원을 사무처 당직자 임금으로 편법 지급
- 민주당, 사무처 당직자가 정책 전문위원으로 둔갑
- 자민련, 국고보조금으로 명예총재 휘호·달력·화첩 등 제작
- 국고보조금 지출 증빙서류의 75.5% 부실증빙서류
- 정당의 전체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39.6%, 당비는 4.8%

2001년 6월 20일(수)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6월 20일(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위원회는 국민세금으로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회계감사가 형식적이며, 현행법을 위반하여 지출하고 있고, 그 증빙서류 또한 부실”하다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2. 실사결과 “국고보조금 20% 이상 정책개발비 의무 사용조항(정치자금법 19조)”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당이 신고한 정책개발비 내역 중,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못했다. (별첨 [1]참조)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1,228,880,000원을 사무처 당직자에게 편법적으로 매달 지급하였다. 한나라당 회계보고서 중 인건비 항목에 나와 있는 당직자의 급여가 단순 사무직 40만원에서 국장은 100만원 선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하기 힘들다. 이는 당직자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작년 2월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 150명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민주당은 유급당직자수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신고한 7월 현재 정책전문위원은 정용택 외 47명이었으나, 유급당직자제한규정이 적용된 8월에 이르러서는 원래 인원에 김재신 외 48명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8월에 추가된 49명은 그 전달인 7월까지 사무처 당직자 급여명세서 상에 유급사무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8월 당시 실제 당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정당법 3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별첨 [2] 참조)

4.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실사 결과, 국고보조금의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가 하면, 자민련은 명예총재 휘호제작비 60,000,000원, 명예총재 화첩 달력제작비 20,000,000원, 총재 권한대행 휘호 인쇄비 2,115,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도대체 국고보조금의 지급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별첨 [3] 참조)

5.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한 증빙서류였으며, 각 정당별 부실비율은 “한나라당 81.6%, 민주당 73.7%, 자민련 60.8%”로 나타났다. 특히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 또는 영수증 생략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 특히 부실 증빙서류의 61.1%가 각 정당이 당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었다. 급여에 대한 온라인 입금의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 조작이 가능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별첨 [4] 참조)

6.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실태를 발표한 후, “정치자금의 철저한 회계감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 대처” “열람제한 및 복사금지 조항 폐지”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은희(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장, 여성연합 상임대표),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처장),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ivilnet.net>

※ 별첨자료(총 10쪽)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 725-7104, 019-351-3896)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결과 발표 자료

일러두기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그 동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였던 정치자금을 직접 실사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치자금 운영실태를 조사·검증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 지난 4월 중순부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전국적으로 열람하여, 그 내역을 일일이 필사하였다. 중앙당 국고보조금 회계자료 필사작업은 자원활동가 5인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약 20여 차례, 90여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분석작업은 정치학자, 회계사 등의 자문을 거쳐 정치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 정치자금 조사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열람제한 규정에 가로 막혀,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출된 회계보고 내역을 열람할 수 없었다. 특히 선거보조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볼 수 없었으며,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의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만이 가능했다.

자료 목 차

[1] 정책개발비 20% 의무조항 준수 여부	(2)
[2] 유급사무원수 제한 규정 위반 ;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삭감해야	(4)
[3] 용도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사용 백태	(5)
[4] 부실 또는 허위 회계보고 사례	(6)
●● 정치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 ●●	(7)
[참고자료] 각종 통계자료	(8)

[1] 정책개발비 20% 의무조항 유명무실

- 정치자금법 19조 ②항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570호 일부개정 1997. 12. 31.]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 ①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1. 한나라당 ; 정책개발비 12억원, 사무처 당직자에게 편법 지급

- 2000년 한나라당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21,046,779,090원이었고, 이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중앙당 3,106,330,793원, 지구당 2,085,977,918원으로 총 5,192,308,711원이었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 상의 정책개발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헌당규 인쇄·제작비(10,050,000원), 정강정책 인쇄비(15,475,000원),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1,228,888,000원), 국회의원 연찬회(16,161,900원), 지구당위원장 연찬회(4,270,250원), 연합뉴스(84,000,000원), 정책위 사무실 용역비(5,630,000원), 총재원광대 특강(792,400원) 등 총 1,365,367,550원은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면, 3,826,941,161원으로 보조금 총액의 18.2%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19조 ②항에 규정을 어겼고, 대통령령 제15570호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 특히,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1,228,888,000원은, 인건비 항목에 나와 있는 당직자의 급여가 단순 사무직 40만원에서 국장 100만원 선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하기 힘들다. 이는 당직자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정책개발비 중 월별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지급 내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6,560,000	153,680,000	147,048,000	146,900,000	154,460,000	158,340,000	154,620,000	157,280,000

2. 민주당

- 2000년 민주당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8,417,237,130원이었고, 이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중앙당 3,692,952,814원, 지구당 438,963,341원으로 총 4,131,916,155원이었다.

- 그러나 민주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 상의 정책개발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화협 회비(1,000,000원), 정강정책 공고(954,859,800원), 실지출로 볼 수 없는 정산금 입금(3,823,835원) 등 총 959,683,635원은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면,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로 볼 수 있는 금액은 3,172,232,520원으로 보조금 총액의 17.2%이다. 결국 민주당은 19조 ②항의 규정을 어겼고, 대통령령 제15570호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2] 유급사무원수 제한 규정 위반 ;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삭감해야

- 작년 2월 개정된 정당법 30조의 2는 2000년 8월 15일부터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를 150명 이상 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정당법 30조의 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②항은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제 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을 제 17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위 규정에 따라 내년엔 민주당에게 지급될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어떤 제보에 따르면, 8월 현재 이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민주당 ; 사무처 당직자가 정책 전문위원으로 둔갑

- 회계보고서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유급당직자수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신고한 7월 현재 정책전문위원은 정용택 외 47명이었으나, 유급당직자제한규정이 적용된 8월에 이르러서는 원래 인원에 김재신 외 48명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8월에 추가된 49명은 그 전달인 7월까지 사무처 당직자 급여명세서 상에 유급사무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유급사무원이 정책전문위원을 하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는 당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보고서 상에만 정책전문위원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정당법 30조의 2의 ②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새천년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소명 및 보완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8월부터 실시된 유급당직자 제한 규정과 관련 없이, 당의 정책기능 강화 지침에 의한 당 규정에 의한 인사 명령이었음. (2000. 8. 17 선관위 보고) ‘조직표상에도 없던 심의위원회도 가공으로 만들어져...(이하 생략)’의 부분은 오보이며 당규 제51조, 제59조에 의해 심의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차후 인사명령전달 지연과 인수단계 과장 등의 사유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업무와 인사명령의 업무가 상이할 가능성은 있음.”

- 8월에 새로 정책전문위원 명의로 임금이 지급된 명단, 가로 안은 7월 직책

김재신(전자홍보국국장), 양선목(국제협력국국장), 유용화(전산국국장), 김현배(인권사회국국장), 양희구(정세분석국국장), 정창교(기획조정국국장), 김영애(국제협력국부국장), 권형우(직능국부국장), 금승기(청년국부국장), 김기운(인권사회국부국장), 김성택(조직1국부국장), 김종철(청년국부장), 박만수(연수국부국장), 국경욱(전자홍보국부국장), 정경환(대표최고위원실부국장), 박정욱(재정국부장), 노은하(대표최고위원실부장), 이경주(전산국부장), 김미중(홍보국기자), 류영근(21세기국정자문위원장실부장), 윤영두(대변인실), 권철승(특보단장실부장), 김명직(인권사회국부장), 김수형(청년국부장), 김재우(당무감사국부장), 문남주(인권사회국부장), 송재석(당무감사국부장), 정재동(국제협력국부장), 편무창(총무국부장), 허 광(총무국부장), 박근용(정세분석국부장), 조남경(조직1국부장), 황대원(지방자치국부장), 고영기(홍보국부장), 김달제(이만섭상임고문실부장), 김은옥(여성국부장), 김 현(대변인실부장), 김희철(21세기국정자문위원장실부장), 박영호(국제협력국부장), 서영교(기획조정국부장), 임정숙(총재비서실부장), 정성영(홍보국부장), 황종우(안보국부장), 박종만(연수국차장), 이호경(기획조정국차장), 김성민(여성국차장), 김옥소(전자홍보국차장), 김용성(홍보국차장), 이현정(정세분석국차장) 이상 49명

[3] 용도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사용 백태

- 정치자금법 19조 ①항은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설치비,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 지출행위가 정당한가를 기준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뽑았다.

1. 민주당 ;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법 위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 공공요금 중 12월 19일, 법무법인 율촌에 변호사 선임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당직자의 소송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민주당 담당자는 전화 소명을 통해, “민주당 창당대회 당시의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시계를 나눠준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2. 자민련 ; 국고보조금으로 명예총재 휘호·달력·화첩 등 제작

- 기타경비 중 화환대금으로 9월 21일 19,500,000원, 11월 29일 8,650,000원, 12월 21일 16,060,000원 등 총 44,210,000원을 지출하였다. 4달 사이에 국고보조금으로 4,421만원의 꽃을 구입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신고된 회계보고서 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 기타경비 중 11월 22일, 이재훈 법률사무소에 이필선사건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타경비 중 12월 15일 명예총재 휘호제작비로 60,000,000을, 12월 18일과 19일 명예총재 화첩 달력제작비로 20,000,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12월 26일과 28일 총재대행 휘호 인쇄비로 2,115,000원을 지급했다.

[4] 부실 또는 허위 회계보고 사례

1. 한나라당

- 국고보조금 지출(총 6,825,629,498원) 내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면,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행 입금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은 전체의 18.4%인 1,253,800,368원이었고, “간이영수증 14.5%, 지출결의서 9.8%, 수령증 1.3%, 급여명세서 55.9%, 기타 0.1%” 등이었다.
- 공공요금 중 12월 4일 전기요금으로 29,200,310원을 지급하였다고 중복 신고하였다.
→ 선관위의 지적에 대한 한나라당의 소명을 통해 “3개월분 연체된 전기요금의 납부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정함.
- 사무소 유지비 중 10월 19일 대광안료에 “기계실 자제구입 등”을 같은날 지출하였음에도, 402,000씩 2건으로 나누어 신고하고 영수증을 생략했다. 이는 500,000원 미만은 증빙서류를 생략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악용한 사례이다.

2. 민주당

- 국고보조금 지출(총 9,019,452,379원) 내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면,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행 입금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은 전체의 26.3%인 2,371,818,091원이었고, “영수증 생략 0.3%, 간이영수증 21.6%, 자체영수증 1.6%, 수령증 6.4%, 급여명세서 36.9%, 기타 7%” 등으로 조사됐다.
- 242개의 각급 지구당에 평균 550여만원(총 1,338,400,000원)의 대의원대회 행사비 및 지구당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각 지구당의 수입란에는 누락되어 있다. 중앙당에서는 지구당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지구당에는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다면, 양자간에 한 쪽은 허위 회계보고를 한 것이다.

3. 자민련

- 국고보조금 지출(총 1,778,981,850원) 내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면,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행 입금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은 전체의 39.2%인 696,622,345원이었고, “간이영수증 3.3%, 자체영수증 0.7%, 급여명세서 55.5%, 기타 1.3%” 등이었다.

●● 정치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필사하여 분석하는 동안 이러한 정당들에게 국민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목모임의 회계장부보다 허술한 증빙서류, 국고보조금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 지출, 회계장부 조작 등 각 정당의 형식적인 보고와 선관위의 의례적인 지적이 지난 21년 동안 반복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이제 유권자인 우리들이 나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 쟁취 시민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연대회의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정당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복사금지조항을 폐지하라.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하고, 복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2001년 5월에 제안한 개정의견에서 “사본 교부”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권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히 회계감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대처하라.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을 위반 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각종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 위법 사항에 따른 보조금 삭감 조치 등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3.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공개하라.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 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된 수입액만을 놓고,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검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입금액과 함께 그 내역까지 신고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4.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배분방식을 개혁하라.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급될 보조금의 총 규모의 산정과 배분 방식에 있어 문제가 많다. 보조금의 총 규모를 산정할 때 유권자 1인당 800원씩을 곱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와 연동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유권자에게 지지한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 정당이 투표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지지 받은 만큼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부실 영수증 비율 및 각종 통계 자료

○ **제출한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증빙서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 정당에 지원되는 만큼, 그 회계보고 및 감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정당이 신고한 “2000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의 증빙서류 중 전체의 75.5%가 부실 증빙서류였다. 정당별 부실비율은 “한나라당 81.6%, 민주당 73.7%, 자민련 60.8%”로 나타났다. 특히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 또는 영수증 생략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

○ **검증하기 힘든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부실 증빙의 61.1%는 각 정당이 당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다. 각 정당이 사무처 당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로 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무처 당직자의 인건비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해도 되느냐의 문제를 차치 하더라도, 온라인 임금이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 조작이 가능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각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금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법상 유급당지사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표 2> 부실영수증 유형별 비교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총지출액	6,825,629,498	9,019,452,379	1,778,981,850
세법상 인정	536,754,865 (7.9%)	2,146,767,134 (23.8%)	612,721,596 (34.4%)
생략 (50만원 이하)	96,302,753 (1.4%)	62,349,117 (0.7%)	32,021,486 (1.8%)
공공요금 생략	620,742,750 (9.1%)	162,701,840 (1.8%)	51,879,263 (2.9%)
소계	1,253,800,368 (18.4%)	2,371,818,091 (26.3%)	696,622,345 (39.2%)
생략 (50만원 초과)	3,000,000 (0%)	23,775,282 (0.3%)	0
간이 영수증	986,779,840 (14.5%)	1,943,844,880 (21.6%)	59,141,000 (3.3%)
자체 영수증	4,730,000 (0.1%)	141,542,500 (1.6%)	13,190,000 (0.7%)
수령증	89,060,000 (1.3%)	581,146,867 (6.4%)	17,800,000 (1%)
지급명세서	1,600,000 (0%)	0	3,100,000 (0.2%)
지출결의서	671,000,000 (9.8%)	0	0
기타	0	632,500,000 (7%)	2,000,000 (0.1%)
급여명세서	3,815,659,290 (55.9%)	3,326,583,019 (36.9%)	987,117,515 (55.5%)
소계	5,571,829,130 (81.6%)	6,649,392,548 (73.7%)	1,082,348,515 (60.8%)
부실비율	81.6%	73.7%	60.8%

※ 각 당이 신고한 보조금의 명세서 상의 총 지출액과 실 지출액 사이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의 체질개선 시급 ; 전체 수입 중 국고보조금 39.6%, 당비 4.8%

우리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정치자금의 수입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거액 후원금에 대한 의존의 악순환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수입구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정당의 체질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 독일 정당들의 수입에서 당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문화적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와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 제한(Matching Fund)”이 그것인데, 정당이 재정마련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과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소액후원금과 소액 당비납부액과 연동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의 체질강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각 정당의 2000년 수입 구조 비교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타	계
한나라당	3,310,718,808 (10.3%)	21,046,779,090 (65.3%)	4,505,000,000 (14%)	3,378,058,828 (10.5%)	32,240,556,726
민주당	2,169,287,579 (3.2%)	18,417,237,130 (27.3%)	40,000,000,000 (59.2%)	6,939,054,550 (10.3%)	67,525,579,259
자민련	477,883,952 (2%)	9,565,670,700 (39.7%)	7,815,000,000 (32.5%)	6,209,290,008 (25.8%)	24,067,844,660
민주노동당	254,079,640 (97%)	0	8,000,000 (3%)	0	262,079,640

※ 전년도 이월 제외

<표 4> 독일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내역 (98년 정치자금 수입에 관한 보고서, 단위 마르크)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타	계
사회민주당 (SPD)	157,800,000 (51.8%)	96,800,000 (31.8%)	36,800,000 (12.1%)	12,900,000 (4.2%)	304,400,000
기독교민주연합 (CDU)	100,700,000 (40%)	73,900,000 (29.3%)	66,000,000 (26.2%)	11,200,000 (4.5%)	251,800,000
기독교사회연합 (CSU)	19,300,000 (29.4%)	17,500,000 (26.7%)	24,500,000 (37.3%)	4,300,000 (6.6%)	65,600,000

※ [독일 민주주의의 시험대 : 정치자금 스캔들] 페터 마이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1981년 이후 20년간 총 4,450억원 지급 ; 내년 한해만 1,139억원 지급예정

<표 5>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억 원)

연도별	배분 · 지급 내역		연도별	배분 · 지급 내역	
	정당별	금액		정당별	금액
1981	합	8	1982	합	10
1983	합	10	1984	합	10
1985	합	10	1986	합	10
1987	합	10	1988	합	10
1989	합	25	1990	합	105
1991	합	105	1992 *	합	422
1993	합	174			
1994	민자당	106	1995 *	민자당	332
	민주당	84		민주당	246
	신민당	15		자민련	151
	통일국민당	12		신민당	0.1
	새한국당	0.3		국민회의	18
	신정치개혁당	0.6		신민당	7
	합	218		합	754
1996 *	신한국당	188	1997 *	한나라당	163
	자민련	102		국민회의	174
	국민회의	100		자민련	61
	민주당	89		국민신당	18
	무정파전국연합	0.06		신한국당	71
	합	479		민주당	17
		합	504		
1998 *	한나라당	329	1999	한나라당	104
	국민회의	246		국민회의	83
	자민련	201		자민련	65
	국민신당	42		합	252
	합	818			
2000*	한나라당	211	2002*	한나라당	444
	민주당	184		민주당	416
	자민련	96		자민련	240
	민국당	24		민국당	36
	한국신당	1		한국신당	2
	합	516		합	약 1,139

- 1) * 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해
- 2) 2002년은 지급 예정